##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0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이주환·이헌승·정동만

정희용・이 용・최승재

배준영 · 김성원 · 김승수

김석기 · 강민국 · 김예지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특히 영세 개인사업자의 타격이 더욱 심한 상태임.

이에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 매출 3천만원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조세특례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범위 등을 확대하여 보다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

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법률 제 호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9천600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69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 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u>4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u>9천600만원</u>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의무의 면제)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u>3천만원</u> 미만이	<u>6천만원</u>
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	

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	
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